「CLEAN신고」 시스템으로 부패·부조리 및 비위행위 신고 통합 관리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○ 관련 법령 또는 자체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도입된 **다양한 고충·비위 신고시스템을 통합·정비**하여 **직원과 외부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**

— 직원들이 적합한 신고시스템을 찾기 어렵고 익명 신고가 허용되지 않아 신고 **접근성에 제약**이 존재했으며, 이해충돌방지법 도입에 따른 신고 증가 등에 대응한 **시스템 확장**이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

○ **윤리경영실**이 직원들의 고충·비위를 효과적으로 **총괄 관리**하고, 신고·처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신고 체계를 개선

— 기존 10여개로 분산 운영되던 각종 신고시스템을 **「CLEAN신고」 하나로 통합**하고 **행내외망 어디서든 접속** 가능할 뿐 아니라 **익명신고**도 가능하도록 개발

○ 추진 경과

① 독립적인 고충·비위 담당 조직(윤리경영실) 신설('22.8월)
② 고충·비위 신고체계 개선 방안 보고('22.11월)
③ 관계부서 등 업무협의 및 시스템 시험운영('22.11~'23.3월)
④ 「CLEAN신고」 시스템 개발 완료 및 가동 개시('23.4월)

○ 주요 특징

— **CLEAN신고** 시스템을 **내·외부망***(BOIS·홈페이지) **모두**에 설치

* 외부망(홈페이지)은 고충·비위 신고 중심으로 구성, 내부망(BOIS)는 고충·비위 신고 외에 외부강의 신고, 금융투자상품거래 신고 등 각종 법규에 따른 신고사항도 포함

— **실명·익명**신고 모두 가능**(내·외부망)***

* 다만, 익명신고는 신고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('23.4월)하여 근거자료가 있는 신빙성 있는 신고에 한해 조치

— 자료수록(FAQ·지침 등) 및 상담자 보호* 등 종합관리 기능에 충실을 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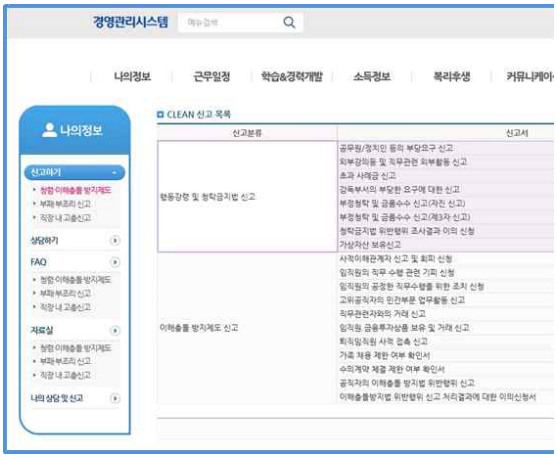
* '보안'기능 활용 시 작성자 본인 및 윤리경영실 직원만 열람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,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국민권익위 등 유관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

「CLEAN신고」 시스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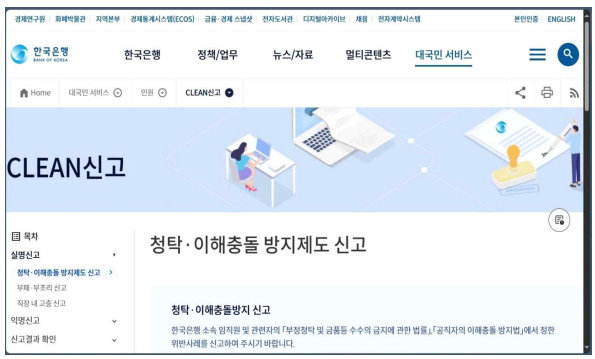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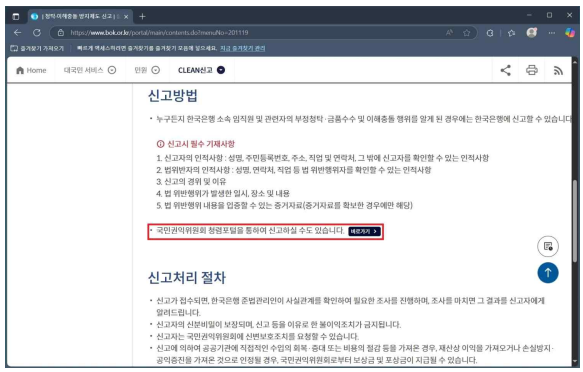
CLEAN신고

청렴·이해충돌방지 제도 신고	부패·부조리 신고	직장내 고충신고
◆ 청탁금지법 · 행동강령	◆ 부패행위 신고	◆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
◆ 이해충돌방지법 · 이해충돌방지규정	◆ 예산 낭비	◆ 직장내 괴롭힘
	◆ 공익신고	◆ 기타 고충(부당야근 등)
	◆ 기타 부조리	

내부망(BOIS) 신고화면

‘신고하기’ 첫화면	세부 신고서 선택 화면
	

외부망(홈페이지) 신고화면

홈페이지 메뉴	유관부처(권익위 등) 신고시스템 연결 버튼
	

□ 추진과정 중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

○ 신고 항목이 여러 부서(감사실·인사경영국 등)와 관계되어 있어 **신고내용 공유 범위, 신고자 보호, 익명신고 기준 마련** 등이 과제로 대두

⇒ **관계부서**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**윤리경영실**이 **창구** 역할을 하고 **각 부서** 해당 내용은 동 부서에서 **처리**토록 하였으며, **익명신고 처리 기준**은 **유관기관 사례**와 **청렴시민감사관**의 **의견**을 반영하여 **신규 제정**

○ 임직원 등이 개편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홍보**가 필요하며, 개설 후에도 **지속적인 유지·관리**가 필요

⇒ 개설(2023.4월) 시 **카드뉴스**(행내 포털) 및 **웹배너**(홈페이지)로 신고시스템 통합을 **적극 홍보**하였으며, 이후 **행내 부패방지교육 등**을 통해 교육을 지속

⇒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**사용자의 의견** 등을 **반영**하여 **시스템**을 개선('23~'25년중 총 11회)하였으며, **제도안내·유사사례 등**을 지속적으로 **업데이트**하고 있음

□ 주요 추진성과

○ 「CLEAN신고」 개설 이후 **업무효율성이 크게 개선***되었으며, 익명신고 접수,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**상담건수**가 증가**

* 종전에는 업무담당자가 각 페이지를 모두 열람하거나 결재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나, 시스템 가동 후에는 담당자가 신고의 내용과 유형을 한 화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중요 신고(행동강령 위반 등)는 신고 접수 사실을 담당자에게 개별 통지

** 익명신고 접수: '22.8월~'23년 없음 → '24년~'25년 7건
상담(서면)사례: '23.1~3월 13건 → '23.4~6월 30건 → '23.하 48건 → '24.상 59건 → '24.하 55건

— **상담 내용**도 단순 절차 관련 문의보다는 청렴·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망라하는 방향으로 **고도화**됨

□ 우수사례 선정 사유

○ 직원들의 **청렴인식을 제고**하고 **우호적인 신고문화**를 조성함으로써 **부패 발생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**

○ 청렴·반부패 **업무담당자**의 **모니터링** 등을 통해 **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**하고자 하는 他기관에도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

√ **해당 사례가 '22년도~'24년도 권익위에 제출한 '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'에 해당 여부**	예 ■ 아니오 □
√ **과제 제출 년도** * ('22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⑤번, ('23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, ('24년도) 청렴노력도 평가 ②번	'22년 □ '23년 ■ '24년 □
√ **'22년도~'24년도 미평가기관에 해당(자율과제 제출)**	예 □ 아니오 ■